

제1961호

고양시보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2023년 3월 15일(수)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3-645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양시 공고
제2023-677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고양시 공고
제2023-679호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업지역에서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용도의 건축물로 인해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 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을 개정하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토지분할제한면적, 용도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경사도 및 평균입목축적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 나.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분할제한 면적을 규정함(안 제23조).

- 다. 학교시설보호지구와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개정함(안 제47조, 제52조 및 제53조).
- 라. 공용시설보호지구와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 마. 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4조 및 제55조).
- 바. 상업지역 안에서 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준주택과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61조 및 별표 24).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4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계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팀(031-8075-3075)
 - 팩 스 : 031-8075-493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협의한 금액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산지가 포함된”을 “산지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녹지지역안에서”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제29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

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정시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 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정시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의3 중 “영 제84조의2제2항”을 “영 제8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용도지역안”을 “용도지역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업지역안”을 “상업지역 안”으로, “공동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5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 수련시설

별표 9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 판매소 및 영 별표 10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가목, 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영 별 표 11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4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별표 17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 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 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8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 수리시설을 제외한다) 및 더목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것

별표 2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 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건축심의 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행위 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도시계획정책관
입안자	과장 성명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팀장 성명	도시계획팀장 김교철
	담당자 성명·전화	성상기 031-8075-3075

[별표 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제61조제2항 관련)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	280% 이하	260% 이하
70 이상 ~ 80 미만	310% 이하	290% 이하
60 이상 ~ 70 미만	350% 이하	32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400% 이하	36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460% 이하	41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530% 이하	470% 이하
20 이상 ~ 30 미만	610% 이하	530% 이하
20 미만	700% 이하	600% 이하

※ 비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는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다.
2.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용 비율을 90% 이상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280% 이하, 근린상업지역에서는 26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생략) 1.~2. (생략)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략) 1.~3. (생략) 4.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u>산지가 포함된</u>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별표 29 ②~④ (생략)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u>녹지지역안에서</u>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u>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u> <신설> <신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4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u>조례로 정하는 금액</u>” 이란 <u>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협의한 금액을 말한다.</u> ④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산지</u> 에 해당하는----- ----- ②~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 -----<u>녹지</u> <u>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u>----- -----<u>다음</u> <u>각 호와 같다.</u> 1. <u>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u> 2. <u>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u>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생 략)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	--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
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하
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
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
도에 쓰이는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의 묘지관련시설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
소를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
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
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
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
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
의 용도로 쓰는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u>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u>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u>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u>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삭 제>
--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삭 제>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	--

<u>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u>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u>요양병원</u>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삭 제>
---	---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략)

1.~22. (생략)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⑦ (생략)

제64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times (\text{제6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이 경우에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생략)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1.~22. (현행과 같음)

② -----상업지역 안-----「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

③~⑦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생 략) 1.~12. (생 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17. (생 략)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현행과 같음) 1.~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4.~17. (현행과 같음)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생 략) 1.~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중 자연권수련시설 4.~6. (생 략) (비고 생략)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 수련시설 4.~6.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9] <u>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u> (생 략) 1.~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4.~7. (생 략) (비고 생략)	[별표 9] <u>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u>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 판매소 및 영 별표 10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7.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10] <u>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u> (생 략)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 3.~8. (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 나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0.~13. (생 략) (비고 생략)	[별표 10] <u>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u>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가목, 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3.~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 및 영 별표 11 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0.~13.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 14] <u>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u> (생 략) 1.~9. (생 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13. (생 략)	[별표 14] <u>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u>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11.~13. (현행과 같음)
[별표 17] <u>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u> (생 략) 1.~8. (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14. (생 략)	[별표 17] <u>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u>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10.~14. (현행과 같음)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생 략)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3~7. (생 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16. (생 략)	[별표 18] <u>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u>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u>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 수리시설을 제외한다) 및 더목을 제외한다]</u> 3~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9~16. (현행과 같음)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 관련) (생 략) 1~3. (생 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 (양식장을 포함한다) 5~6. (생 략)	[별표 21] <u>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 관련)</u>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u>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u> 5~6. (현행과 같음)

[별표 24]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61조제2항 관련)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이상 ~ 90 미만	<u>450% 이하</u>	<u>350% 이하</u>
70이상 ~ 80 미만	<u>510% 이하</u>	<u>400% 이하</u>
60이상 ~ 70 미만	<u>570% 이하</u>	<u>450% 이하</u>
50이상 ~ 60 미만	<u>630% 이하</u>	<u>500% 이하</u>
40이상 ~ 50 미만	<u>690% 이하</u>	<u>550% 이하</u>
30이상 ~ 40 미만	<u>750% 이하</u>	<u>600% 이하</u>
20이상 ~ 30 미만	<u>820% 이하</u>	<u>650% 이하</u>
20 미만	<u>900% 이하</u>	<u>700% 이하</u>

[별표 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제61조제2항 관련)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	<u>280% 이하</u>	<u>260% 이하</u>
70 이상 ~ 80 미만	<u>310% 이하</u>	<u>290% 이하</u>
60 이상 ~ 70 미만	<u>350% 이하</u>	<u>320% 이하</u>
50 이상 ~ 60 미만	<u>400% 이하</u>	<u>360% 이하</u>
40 이상 ~ 50 미만	<u>460% 이하</u>	<u>410% 이하</u>
30 이상 ~ 40 미만	<u>530% 이하</u>	<u>470% 이하</u>
20 이상 ~ 30 미만	<u>610% 이하</u>	<u>530% 이하</u>
20 미만	<u>700% 이하</u>	<u>600% 이하</u>

※ 비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는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다.
2.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용 비율을 90% 이상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280% 이하, 근린상업지역에서는 26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식 1]

규제영향분석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도시계획정책관	작성자	성명	성상기
	실장	황주연		직급	시설9급
	과장	황수연		연락처	031-8075-3075
	팀장	김교철		이메일	sangki@korea.kr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 구분	신설	강화	존속기한연장	내용심사			
		○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팀 실장 : 황주연 / 정책관 : 황수연 / 팀장 : 김교철 / 담당자 : 성상기						
4. 근거법령명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 ○ 「주택법 시행령」제4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준주택 용도 건축 사업시행자						
6. 규제존속기한	☐ 유 ☒ 무						
7.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단독 건축에 적용 ○ [별표 24]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강화						
	<table><tr><th>현행</th><th>개정안</th></tr><tr><td>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략) 1.~22. (생략)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⑦ (생략)</td><td>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1.~22. (현행과 같음) ② ----- -----상업지역 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 ----- ----- ③~⑦ (현행과 같음)</td></tr></table>		현행	개정안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략) 1.~22. (생략)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⑦ (생략)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1.~22. (현행과 같음) ② ----- -----상업지역 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 ----- ----- ③~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략) 1.~22. (생략)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⑦ (생략)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1.~22. (현행과 같음) ② ----- -----상업지역 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 ----- ----- ③~⑦ (현행과 같음)						

[별표 24]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61조제2항 관련)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이상 ~ 90 미만	450% 이하	350% 이하
70이상 ~ 80 미만	510% 이하	400% 이하
60이상 ~ 70 미만	570% 이하	450% 이하
50이상 ~ 60 미만	630% 이하	500% 이하
40이상 ~ 50 미만	690% 이하	550% 이하
30이상 ~ 40 미만	750% 이하	600% 이하
20이상 ~ 30 미만	820% 이하	650% 이하
20 미만	900% 이하	700% 이하

[별표 24]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61조제2항 관련)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이상 ~ 90 미만	280% 이하	260% 이하
70이상 ~ 80 미만	310% 이하	290% 이하
60이상 ~ 70 미만	3500% 이하	320% 이하
50이상 ~ 60 미만	400% 이하	360% 이하
40이상 ~ 50 미만	460% 이하	410% 이하
30이상 ~ 40 미만	530% 이하	470% 이하
20이상 ~ 30 미만	610% 이하	530% 이하
20 미만	700% 이하	600% 이하

※ 비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는 공동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다.
2.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 70% 이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용 비율을 90% 이상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280% 이하, 근린상업지역에서는 26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상업지역에 주거용도의 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나 상업기능이 발달하지 않고 상업지역 활성화 저해 및 기반시설 문제 발생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상업지역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주거목적(공동주택 및 준주택) 개발을 제한하여 상업지역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 유 ☒ 무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 방법 사용 가능

-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비용) 별도 비용 발생하지 않음
 - (편익)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 활성화
 - (비용과 편익 비교) 상업지역 기능 활성화로 인한 용도지역 기능 강화

4. 경쟁제한적 요소·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 해당없음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상위법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해당 규제에 대해서도 상위법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고양시의 여건을 고려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6. 규제의 집행 가능성(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등)

-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집행 가능함.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재 위탁 운영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 상위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의2).
- 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게시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갱신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2항).

다. 상위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3조제7항).

라. 전자게시대의 위탁기간 및 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의2).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건축디자인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건축디자인과 광고물팀(031-8075-3453)

- 팩 스 : 031-8075-495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규제자유특
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
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하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
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소심의위원회의”를 “소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20일 이내(소위원회의 경우 15일)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간사) ①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1조제3항 중 “위탁지정신청서”를 “위탁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수탁자를”을 각각 “수탁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별표 1 제7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전자게시대의 위탁) ① 시장은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자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자게시대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전자게시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선정방법 등은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0조제4항 중 “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32조 후단 중 “수탁자가”를 “수탁기관이”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9호 중 “제1호가목”을 “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 사무로 보며, 해당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건축디자인과
입안자	과장 성명	건축디자인과 박 문 희
	팀장 성명	광고물팀장 박 성 우
	담당자 성명·전화	이 원 구 031-8075-345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라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광고물 업무담당 과장(당연직)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하 나.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다.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조(목적)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 -----.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하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

2.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간사는 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5조의2(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④ (생 략)

⑤ 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생 략)

<신 설>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 ① (생 략)

② 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위원회의-----

-----.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소위원회의 경우 15일)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8조의2(간사) ① 심의위원회와 소위

위원회에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위탁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④ (현행과 같음)

⑤ -----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3년으로 한다.

③ -----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2. (생략)

⑤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수탁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제2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관리 위탁)

시장은 시장이 설치하는 디지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디지털광고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수탁기관-----

-----.

④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을-----.

1.~2. (현행과 같음)

⑤ -----

-----수탁기관을-----.

<삭제>

⑦ 영 별표 1 제7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의2(전자게시대의 위탁) ① 시장

은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자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자게시대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전자게시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선정방법 등은

제30조(교육의 위탁 등) ①~③ (생략) ④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u>하</u> <u>되</u>, <u>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u> <u>수 있다.</u> ⑤~⑨ (생략) 제32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영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 고물 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 이 경 우 제23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u>수탁자</u> <u>가</u> 징수한다. [별표 7] <u>과태료 부과기준</u>(제33조 관련) (표 생략)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8. (생략) 9. 제1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 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 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 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u>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u> <u>다.</u> 제30조(교육의 위탁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한다.</u> ⑤~⑨ (현행과 같음) 제32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 ----- ----- -----<u>수탁</u> <u>기관이</u>-----. [별표 7] <u>과태료 부과기준</u>(제33조 관련) (표 현행과 같음)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8. (현행과 같음) 9. 제1호----- ----- ----- ----- -----.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우리시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집대성한 고양시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조례의 ‘역사박물관’을 ‘공립박물관’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는 등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 라.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문화예술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정책팀(031-8075-3395)

- 팩 스 : 031-8075-492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와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소장품의 수집·제작·보존·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박물관의 전시·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연구 등에 관한 사항
7.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문화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건립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장은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관계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문화예술과장 서 은 원
	팀 장 성 명	문화유산정책팀장 이 성 규
	담 당 자 성명 · 전화	이 영 민 031-8075-3395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고양시 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위원회의 기능)</u> 위원회는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수집·제작·보존·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박물관의 전시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u>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u>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와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소장품의 수집·제작·보존·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박물관의 전시·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연구 등에 관한 사항 7.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박물관 관련 시 소속 공무원
4. 시의회 의원 3명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와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문화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u>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유물분과 위원회와 전시환경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기획유물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u> <u>③ 전시환경분과위원회는 제2조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u> <u>제8조(분과위원회의 조직 등) ① 각 분과위원회는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u> <u>② 각 분과위원장의 직무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u>	<u>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u> <u>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u>③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u> <u>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u> <u>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장은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	---